

2004. 3.

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 제 시

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4 - 15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

제출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하고,
-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일시상환으로 하였으나, 분할상환을 추가하여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운용관·기금분임운용관·기금출납원 등 자금관리공부원을 지정함. (안 제3조제4항 신설)
- 나. 행정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폐지함.
(안 제6조제3호 삭제)
- 다. 융자금 상환방법에 대하여 분할상환을 추가함.
(안 제11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기업지원실태 특별감사결과 지적사항 : 【도 감사 07000-310(03.417)】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결과 : 2003.11.12 ~ 2003.12. 2(20일간)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

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용자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용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자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자치행정국장
2. 기금분임운용관 : 지역경제과장
3. 기금출납원 : 관련업무담당

제6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중 “일시에”를 “일시 또는 분할하여 용자기간내에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용 자 신 청 서

- 업 체 명 :
- 소 재 지 :
- 대 표 자 : (주민등록번호)
- 용자신청액 : 원
- 업 체 현 황 :

업 종		공장규모	대 지	평
생 산	주생산품 (생산액	년 백만원)	건 물 동	평 명
자 본	자기자본 타인자본 계	백만원 백만원 백만원	종 업 원 수 출	명 명 년간 천불

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첨 부 : 사업계획서 1부

김제시장 귀하

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금관리) ① ~ ③ (생략) 〈신설〉	제3조(자금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자금관리 공 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 1. 기금운용관 : 자치행정국장 2. 기금분임운용관 : 지역경제과장 3. 기금출납원 : 관련업무담당
제6조(융자신청) 융자를 받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 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공장등록증 사본</u>	제6조(융자신청)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<삭제>
제11조(자금상환) ①융자금은 <u>일시</u> <u>에</u>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(생략)	제11조(자금상환) ①---- <u>일시 또는</u> <u>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